

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2023-16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국내 3대 화강석 채석 산지인 거창군의 석재산업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및 석재 채취업 및 가공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(안 제1조~제3조)

나. 군수의 책무, 석재사업자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·제5조)

다.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을 정함(안 제6조)

라. 재정지원을 정함(안 제7조)

1)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·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

2)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

3) 석재사업장 시설 개선

4)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·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

5) 쇄골재용(碎骨材用) 석재의 군외 운반

6)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
2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
3)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예정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23. 1. 20.~2. 9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4) 비용추계서: 붙임

5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석재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석재산업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군에서 채취 또는 가공되는 석재 및 석재제품의 판매·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석재사업자의 책무) ① 석재사업자는 우수 석재 및 석재제품을 채취·가공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② 석재사업자는 업체 간 상호 협력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며, 부조리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)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석재산업단지
2.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
3. 석재 기능교육관 등 석재기술 보급 또는 연구·개발 시설

4. 석재를 활용한 공원 등 전시 및 휴식 공간
5.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

제7조(재정지원) 군수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석재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1.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·박람회·축제 등의 개최 및 참가
2.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
3. 석재사업장의 시설 개선
4.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·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
5. 쇠골재용(碎骨材用) 석재의 군외 운반
6.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 발생 요인: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·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비용,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쇄골재용(碎骨材用) 석재의 군외 운반비용

나. 관련 조문: 재정지원(안 제7조)

2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1차연도 (2023)	2차연도 (2024)	3차연도 (2025)	4차연도 (2026)	5차연도 (2027)	합계
군비	100	100	100	100	100	500

3. 관련 의견

석재 채취업 및 가공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·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비용 지원

가. 채석 및 가공 업체 30개 × 1,000천원 = 30,000천원

2.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쇄골재용(碎骨材用) 석재의 군외 운반비용 지원

가. 채석업체 7개 × 10,000천원 = 70,000천원

작성자 산림과장 강 신 여